

의안번호	2126501
의 퇴 인	강기윤의원
회 답 일	2024. 3.4.
추 계 번호	24D01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순직군경 등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¹⁾이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비용감면을 받는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43억원, 2029년 51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간 총 235억원(연평균 47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순직군경 등 선순위유족의 위탁병원 진료 및 비용감면 연령제한 폐지 (안 제42조제7항제3호)	4,335	4,514	4,699	4,893	5,094	23,535	4,707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2조제7항제3호(진료)	순직군경 등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위탁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비용감면 연령 제한을 폐지	의무규정

1) 현행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7항제3호에 따라 7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2조제7항제3호(진료)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는 순직군경 유족에 한정하여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연령제한을 폐지한다고 하고 있으나, 개정조문에서는 순직군경 유족 이외에 전몰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추계함
- 개정안에 따라 위탁병원 진료 대상이 되는 순직군경 등의 선순위유족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면, 75세 미만 대상자가 위탁병원 진료 및 비용감면 대상에 포함됨. 다만, 추가되는 선순위유족의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이 어려우므로, 75세 이상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의 최근 5년간 진료횟수 및 진료단가를 유사사례로 적용하여 추계함
- 안 부칙에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순직군경 등 선순위유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 및 비용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연령 제한 폐지(안 제42조제7항제3호)

- 개정안에 따라 순직군경 등 선순위유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경우 75세 미만 대상자가 진료대상으로 추가되고 이들에 대한 진료비 감면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대상자) 개정안에 따라 위탁병원 의료지원 대상으로 추가되는 75세 미만 순직군경 등의 선순위유족수는 2023년 기준 25,143명이고, 여기에 최근 3년간 증가율 -3.2%를 적용하여 추정

[표 2] 순직군경 등 유족 중 선순위자 현황

(단위: 명)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제12조제1항제2호: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제12조제1항제3호: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70,379	70,209	70,142	-0.2
제12조제1항제4호: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특별공로상이자 중 상이등급 이상자가 사망시 선순위자				
75세 이상	43,541	43,967	44,999	1.7
75세 미만	26,838	26,242	25,143	-3.2

자료: 국가보훈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

- (연간 수진횟수) 전제에서 밝힌 바와 같이 75세 미만 선순위유족의 위탁병원 연간 수진횟수는 75세 이상 선순위유족의 연간수진횟수를 참조하여, 2022년 기준 수진횟수인 입원 2.7회, 외래 4.6를 적용([표 3] 참조)
- (1회당 진료단가) 전제에서 밝힌 바와 같이 75세 미만 선순위유족의 위탁병원 진료단가는 75세 이상 선순위유족의 위탁병원 진료단가를 참조하여, 2022년 기준 단가에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표 3] 참조)
 - 입원은 2022년 기준 단가 24,951원에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 7.3% 적용
 - 외래는 2022년 기준 단가 17,518원에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 7.8% 적용

[표 3] 75세 이상 국가유공자 유족(60% 감면대상자) 위탁병원 진료현황: 2018~2022년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입 원	진료연인원 (명, a)	160,938	220,181	183,378	159,251	108,012	-9.5
	의료지원대상자 (명, b)	40,847	40,531	39,983	39,983	40,492	-0.2
	1인당 연간수진횟수 (회, a/b)	3.9	5.4	4.6	4.0	2.7	-9.3
	총진료비 (백만원, c)	3,029	4,697	4,221	3,903	2,695	-2.9
	1회당 진료단가 (원, c/a)	18,821	21,332	23,018	24,508	24,951	7.3
외 래	진료연인원 (명, d)	295,715	394,043	334,810	262,859	187,983	-10.7
	의료지원대상자 (명, e)	40,847	40,531	39,983	39,983	40,492	-0.2
	1인당 연간수진횟수 (회, d/e)	7.2	9.7	8.4	6.6	4.6	-10.5
	총진료비 (백만원, f)	3,839	5,548	5,048	4,046	3,293	-3.8
	1회당 진료단가 (원, f/d)	12,982	14,080	15,077	15,392	17,518	7.8
합 계(c+f)		6,868	10,245	9,269	7,949	5,988	-3.4

자료: 국가보훈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

- (추가재정소요) 75세 미만 진료대상자 수에 연간 진료횟수 및 1회당 진료 단가를 곱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한 결과 향후 5년간 235억원으로 추정

[표 4] 위탁병원에서 선순위유족이 진료를 받는 경우 연령 제한 폐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75세 미만 대상자(명, a)		23,555	22,799	22,067	21,359	20,674	
연간수진횟수(회, b)	입원	2.7	2.7	2.7	2.7	2.7	
	외래	4.6	4.6	4.6	4.6	4.6	
1회당 진료단가(원, c)	입원	30,826	33,078	35,493	38,085	40,866	
	외래	21,932	23,638	25,476	27,458	29,594	
소요비용(백만원, a×b×c)	입원	1,937	2,012	2,089	2,170	2,254	10,461
	외래	2,398	2,502	2,610	2,723	2,840	13,073
	합계	4,335	4,514	4,699	4,893	5,094	23,53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여은구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여은구	02-6788-4673	cecil@assembly.go.kr